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송옥주

서영교 · 정성호 · 문진석

허종식・황 희・허 영

김주영 · 김영진 · 안도걸

임오경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45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30일"을 "60일"로, "45일"을 "75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	1		
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			
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			
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			
(<u>30일</u> 을 한도로 하되, 한 번	<u>60일</u>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u>45일</u> 을 한도로 한	<u>75일</u>		
다)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